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제 2019-103호
2019년6월3일(월)

여수시보

시정지표

- 1. 시민공감
- 1. 균형있는
- 1. 사람중심
- 1. 품격있는
- 1. 살기좋은
- 감상나눔문화
- 동생높은정
- 경복관광
- 경제지환경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목 차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19-1429호 해양레포츠 체험장(웅천친수공원 해변) 주변 CCTV 설치 행정예고 /3
- 여수시 공고 제2019-1442호 해양공원 노점상 일제정비에 따른 노상적치물 보관 및 처리에 관한 공고 /6
- 여수시 공고 제2019-1446호 여수시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9

【기 타】

- 여수시 규칙 제2019-708호 여수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24
- [별표1] 여수시 사무전결처리 사항(개정)190603

| | | | | | | | | |
|---|--|--|--|--|--|--|--|--|
| 회 | | | | | | | | |
| 관 | | | | | | | | |

해양레포츠 체험장(웅천친수공원 해변) 주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장(웅천친수공원 해변) 주변의 편의시설 및 체험장비 관리와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예정 사항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3일

여 수 시 장

1. 행정예고내용 : 해양레포츠 체험장(웅천친수공원 해변) 주변 CCTV 설치

2. 설치목적

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장 편의시설 및 체험장비의 안정적 관리

나. 각종 사건·사고 예방(방법)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9. 6. 3.(월) ~ 6. 24.(월)/ 21일간

5. 설치내역

가. 설 치 명 : 해양레포츠 체험장(웅천친수공원 해변) 주변 CCTV 설치

나. 시 행 청 : 여수시청(해양항만레저과)

다.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라. 설치관련 정보

| 설치예정지 | 설치대수 | 설치시기 | 비 고 |
|----------------------------|---------|------------|-----|
| 해양레포츠 체험장 주변(웅천친수공원 해변) | CCTV 3대 | 2019년 6월 중 | |

6.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 기간 내에 여수시청 해양항만레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redface24@korea.kr) 등

다. 제출기관 : 여수시장 (참조 : 해양항만레저과)

- 주 소 : 여수시 여문2로 124(문수청사)
- 팩 스 : 061-659-5830(팩스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문 의 처 : 해양항만레저과 해양레포츠팀(☎ 061-659-3967)

붙임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노상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내역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제75조를 위반하여 적치한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적치물을 제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물건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전라남도 여수시장

1. 공고기간 : 2019. 6. 3. ~ 2019. 6. 18.(14일간)

2. 보관중인 노상적치물 목록

| 연번 | 보관 일자 | 위반장소 | 적치물 내역 | | | 보관장소 | 취급자 | 비고 |
|----|-------------|--------------|--------|-------|----|----------------|-----|----|
| | | | 품명 | 규격 | 수량 | | | |
| 1 | 2019. 5.31. | 중앙동 368번지 | 솜사탕 | 2m*1m | 1 | 응천동 도로정비 창고 | 김상천 | |
| 2 | 2019. 5.31. | 중앙동 368번지 | 군밤 | 3m*1m | 1 | | | |
| 3 | 2019. 5.31. | 중앙동 368번지 | 꼬치구이 | 3m*1m | 1 | | | |
| 4 | 2019. 6. 1. | 중앙동 368번지 | 꼬치구이 | 3m*1m | 1 | | | |

3. 물품처리 : 공고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폐기처분

4. 문의처 : 전라남도 여수시청 도시시설관리과(☎ 061-659-5108)

5. 보관 사진 내역





공 고

「여수시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 우리시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50천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노년기가 늘어난 만큼 어르신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노후 활동을 위한 체육시설이 절대부족 어르신들만의 특화된 체육시설로 문화·체육·오락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이 필요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다목적시설로서 지역 내 건전한 문화형성에 기여하고 차별화된 시설로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 사용허가 (안 제4조)
 - 사용허가 우선순위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
 - ▶ 대한노인회 여수지회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 ▶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직장 및 동호인 등 클럽회원 다수가 참여하는 체육활동

○ **사용허가의 취소(안 제5조)**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할 때

○ **사용시간 (안 제6조)**

- 주간 : 09:00 ~ 18:00, 야간 : 18:00 ~ 22:00

○ **사용료 등 (안 제7조)**

-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다목적체육센터 내의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사무의 위탁 (안 제9조)**

- 시장은 다목적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시가 설립한 지방공단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다목적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시장은 다목적체육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수탁자의 의무 (안 제10조)**

- 제9조에 따라 위탁받은 수탁자는 위탁 계약 내용을 준수하고, 시장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

○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 감독 (안 제11조)**

-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다목적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 예고기간 : '19. 6. 3. ~ '19. 6. 24.(21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장(노인장애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가) 주 소 :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장(노인장애인과장)

나) 전 화 : 061)659-3733, 팩스 : 061)659-5821

다) 이메일(E-Mail) : noh1212@korea.kr

나.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이메일(E-Mail) 제출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여수시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여수시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조례안 항목별 내용 | 찬성여부 | | 의견(사유) | 기타 참고사항 |
|------------|------|----|--------|---------|
| | 찬성 | 반대 | | |
| | | | | |

여수시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다목적체육센터”란 어르신들의 체육활동과 여가활동을 위해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이용자 및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이용자) ① 다목적체육센터는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이다.

② 제1항에 따라 다목적체육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회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자가 다목적체육센터 내의 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
2. 대한노인회 여수지회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3.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클럽회원 다수가 참여하는 체육활동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 신청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2호·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목적체육관 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목적체육센터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리행위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사용 시간 등) ① 다목적체육센터의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운영 프로그램별로 시간을 따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주간 : 09:00 ~ 18:00
2. 야간 : 18:00 ~ 22:00

②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만 사용하고 행사 등이 종료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용료 등) ①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다목적체육센터 내의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사고예방,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다목적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가 설립한 지방공단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다목적체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목적체육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등) ① 제9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수탁자는 위탁 계약 내용을 준수하고, 시장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운영 중에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다목적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이나 보고를 받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 및 위탁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다목적체육센터 시설물 사용료(제7조 관련)

□ 다목적체육관 대관료

(단위 : 원)

| 시설명 | 기준 | 체육행사 | | 일반행사 | | 비고 |
|--------|---------------|--------|--------|---------|---------|----|
| | | 평일 | 공휴일 | 평일 | 공휴일 | |
| 다목적체육관 | 1회 (4시간기준) | 60,000 | 90,000 | 120,000 | 180,000 | |

* 야간 사용료는 위 사용료의 150%로 한다.

□ 다목적체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 구분 | | 사용료 | 비고 |
|----------|-------|--|----|
| 전기 | 라이트시설 | 기본료+(월 기본료×사용일수/30)+전기사용료 * 기본료 : 20,000원 | |
| | 일반전기 | 기본료(10,000원)+(월 기본료×사용일수/30)+ 전기사용료 | |
| 냉·난방료 | | 기본료(40,000원)+실제 사용한 전기·가스가격 | |
| 음향설비(1일) | | 기본료(50,000원/마이크 3개 기준) * 1개 추가 시 5,000원 | |
| 빔 프로젝터 | | 10,000원(1시간 당) | |
| 기타 집기 | | 탁자 : 1,000원(1개당) 연설대 : 5,000원 사회대 : 5,000원 | |

회 원 등 록 신 청 서

※ 회원등록 제 호

| | | | | |
|------|-----|------|---|--------|
| 회원번호 | | 회원성명 | | 사 진 |
| 생년월일 | | 성 별 |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 |
| 주 소 | | | | |
| 전화번호 | 자택) | 휴대폰) | | |

프로그램 이용 현황

- 노래교실 서예교실 바둑·장기교실 배드민턴
 탁 구 장 당 구 장 상설스포츠실 게이트볼장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 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 회원관리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가족사항, 차량번호, 건강상태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청 회원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가입에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3조의 법령에 따른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안내 받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함 , 동의안함

여 수 시 장 귀하

다목적체육관 사용허가 신청서

| | | | | | |
|--------------|----------------------|-------|---------|-------|----------|
| 신 청 인 | 성 명 (대표자) | | 단체·클럽명 | | |
| |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 |
| | 주 소 | | | | |
| 사용기간 | 주간 | 년 월 일 | 시부터 | 년 월 일 | 시까지(일간) |
| | 야간 | 년 월 일 | 시부터 | 년 월 일 | 시까지(일간) |
| 사용내용 | 시 설 명 | | 참여인원 | | |
| | 사용목적 (행사명) | | | | |
| 부속시설 장비사용 | 음향설비 | | 조명시설 | | |
| | 전기시설 | | 냉·난방 | | |
| | 빔 프로젝터 | | 기 타 | | |
| 사 용 료 | 원 (납부일 :) | | | | |
| 특기사항 | | | | | |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 수 시 장 귀 하

| 다목적체육관 사용허가증 | | | | | |
|---|-------------------|-------|--------|-------|---------|
| 허가번호 | | | | | |
| 신청인 (사용자) | 성명 (대표자) | | 단체·클럽명 | | |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
| | 주소 | | | | |
| 사용시설 | | | | | |
| 사용기간 | 주간 | 년 월 일 | 시부터 | 년 월 일 | 시까지(일간) |
| | 야간 | 년 월 일 | 시부터 | 년 월 일 | 시까지(일간) |
| 사용목적 (행사명) | | | | 참여인원 | |
| 부속시설 허가내용 | 음향설비 | | 조명시설 | | |
| | 전기시설 | | 냉·난방 | | |
| | 빔 프로젝터 | | 기 타 | | |
| 사용료 납부사항 | | | | | |
| 허가조건 | 뒷면 기재 내용과 같음 | | | | |
| <p>「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증을 교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여 수 시 장 (인)</p> | | | | | |

허 가 조 건

1. 장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는 사용자측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2.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물 파손에 대해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이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하는 행사와 겹칠 경우 시장과 신청인 간의 상호 협의·조정예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4. 장내에는 화기류, 음식물 등의 반입을 일체 금하여야 하며 다목적체육관에서 운동 시에는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5. 경기장 내에 임의로 별도 시설을 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사용자는 설치(부착)한 각종 시설물을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7.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설물에 대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은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어 깨끗이 처리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사항은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 「여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여수시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 제정을 위한 사항으로 1년간 직영운영 후 위탁할 예정이므로 발생비용이 한시적인 경비로서 해당없음.

3.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장 서 정 신

제6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6 월 3 일

여 수 시 장

권영봉



여수시 규칙 제708호

붙임 여수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 중 “상이할 때”를 “상이할 때”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